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	담 당 자	민 인 영 사무관 (02-2100-2661)
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(02-2100-2530)		박 정 원 사무관 (02-2100-2531)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류 국 현(02-3145-6700)		김 동 철 팀 장 (02-3145-6725)
	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이 근 우(02-3145-7120)		김 정 훈 팀 장 (02-3145-7130)

제 목 : 일명 “가상통화펀드”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

1 "가상통화펀드" 개요

-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*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“펀드”(이하 “가상통화펀드”)라고 지칭하고 있고

* Initial Coin Offering

- 운용사·수탁회사·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·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

2 관련 법령

-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,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
 -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
 -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
 -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

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

- ① (금융위 인가)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함
- ② (펀드 등록 및 공시 등)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, 공모 펀드는 투자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증권신고서·투자설명서 제출·공시 의무
- ② (건전성규제) 집합투자업자 등은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 규제 적용
- ③ (영업행위규제) 집합투자업자 등은 투자권유규제(고객과약의무, 설명의무, 부당권유 금지 등),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적용

3 투자자 유의사항

□ 일명 “가상통화펀드”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*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

- * ① 운용사·수탁회사·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 구성
② 펀드의 모집, 설정, 만기시 펀드 상환 등 거래구조 명시
③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 등을 포함한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공시

- 동 "가상통화펀드"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,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
- 해당 운용사·판매회사·수탁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

- 따라서, "가상통화펀드"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,
-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,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
 -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“가상통화펀드”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